

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's Office	보도참고자료		보도시점	자료배포일	매수
			2011. 5. 19(목). 11:15이후	2011. 5. 19	5매
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	담당 부서	국무총리실 경제규제심사2과	이용의 과장 / 유경호 사무관 02-2100-2295, 2298		
		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	이문기 과장 / 김영아 사무관 02-2110-8356, 8358		
'11.5.19(목) 11:15 이후 보도 바랍니다. [통신·방송·인터넷 포함]					

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

- ◇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유형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등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
- ◇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지급기한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방지
- ◇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및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

□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「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」을 마련하고,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.

-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분야의 상호 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.

□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금금 미지급, 추가공사의 비용전가,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또한,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지급기한(15일) 및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 시기(10일)를 명확히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- 한편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보증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·점검할 예정이다.

-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,

-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 (Regulatory Information System)을 통해 점검하고,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.

[붙임] 1.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

2. 「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」 (별도 첨부)

①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

1-1.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

- (현행)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,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제한적

*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당특약의 예시
 -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
 -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

- (개선)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,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

1-2.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

- (현행) 하도급률이 82% 미만인 경우,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나,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·납품계약인 경우 적정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

< 사 례 >
 * 동일인과 자재납품(하도급률 67%), 시공설치(하도급률 94%)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, 발주자에게는 시공계약만 하도급 통보할 경우 적정성 심사 회피 가능
 ⇒ 자재납품과 시공설치를 1건으로 보면 하도급률은 70%로 적정성 심사대상

- (개선)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·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,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

1-3.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

- (현행)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하여 하도급자 권리보호에 미흡
- (개선)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

②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

2-1.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

- (현행)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

* 1,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보증수수료 부담(전체공사비의 약 0.44%)

- (개선)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,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,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화

2-2.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지급기한 명확화

- (현행) 선금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착수하는데 지장 초래
- (개선)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·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

2-3.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

- (현행)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등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, 검사결과를 하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
- (개선)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

[3]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

3-1.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- (현행)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 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
- (개선)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,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

-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~6% 가산
-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가능 입찰 규모 결정

3-2.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

- (현행)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,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,
 -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할 공사내용 등 기본사항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률 등 하도급 관련 주요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
- (개선)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, 하도급대금, 지급방법, 지급기한, 지급 횟수,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

3-3.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

- (현행) 건설공사 관련 분쟁발생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가능하지만, 건설사의 인식부족으로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저조
- (개선) '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', '표준하도급계약서' 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여 건설분쟁 중재 활성화

3-4.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

- (현행)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,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
- (개선)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

목 차

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

2011. 5.

국무총리실 · 국토해양부

I. 추진 배경	1
II. 개선 방향	2
III.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	3
IV. 규제개선 추진과제	4
1.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	4
1-1.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	4
1-2.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	5
1-3.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	6
2.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	7
2-1.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	7
2-2.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지급기한 명확화	8
2-3.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	9
3.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	10
3-1.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	10
3-2.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	11
3-3.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	12
3-4.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	13
V. 향후 추진계획	14
〈붙임〉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	15

I. 추진 배경

-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
도급형태상 수직적인 원·하도급 관계 비중이 높은 수준

* 국내건설업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금액에서
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73%

(자료 : 국토해양통계연보, 단위 : 10억원)

구 분	전문건설업체 도급액(A)	원도금액(B) (발주자↔전문건설)	하도금액(C) (종합건설↔전문건설)	비율(C/A)
2007	63,834	17,982	45,852	71.8%
2008	71,556	19,006	52,550	73.4%
2009	73,453	19,368	54,085	73.6%
합 계	208,843	56,356	152,487	73.0%

- 한편,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
중이나,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상황

- 공정거래위원회 「201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」 결과
 -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: 47.0%로 전년(42.9%) 대비 4.1%p 증가
 - * 계약서 등 서면미발급(24.4%), 대금지급관련 법위반(20.8%) 등이 주요한 유형

- 건설분야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
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상호협력적 하도급 관계
구축 필요

건설업계 건의('11.1~'11.2) 및 해당부처와의 협의('11.3~'11.4)를
거쳐 건설하도급 관련 10개 개선과제 선정

II. 개선 방향

< 목표 및 기본방향 >

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

하도급 계약제도 개선

- 하도급자에 대한
부당특약 유형 확대
- 하도급계약 적정성
심사대상 확대
- 하도급 계약서 교부
의무 위반에 대한
처벌근거 마련

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

- 하도급대금 지급
보증 면제제도 개선
- 하도급자에 대한
선금금 지급기한
명확화
- 하도급 건설공사
검사완료 시기
명확화

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

- 상호협력평가 우수
업체에 대한 인센티브
강화
-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
정보제공 확대
- 건설하도급 분쟁해결
실효성 강화
- 전문건설업 등록
업무의 전문성 제고

III.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

□ 관련법 : 건설산업기본법

-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·감리·시공·사업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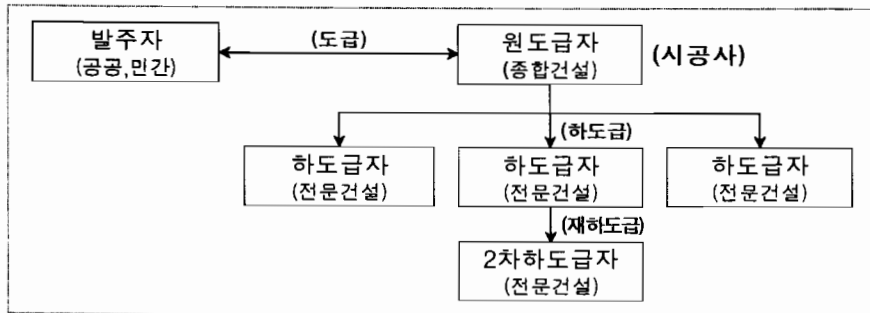
□ 건설공사의 하도급 체계

-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는 원도급자가 되어 당해 공사의 전체 시공을 책임지며 시공은 대개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어 시행
 - 원도급자는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재무·영업 등 기업활동을 주로 담당
- 하도급업무는 대부분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데, 원·하도급 관계의 수직적·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발생

- * 원도급자 :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 건설사이며, 주로 종합건설업체가 이에 해당
- * 하도급자 :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자이며, 주로 전문건설업체가 이에 해당

종합건설업체(원도급자)	전문건설업체(하도급자)
11,956개 (23.7%)	38,426개 (76.3%)

□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



IV. 규제개선 추진과제

1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

1-1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, 하자담보책임 전가,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부분으로 제한
-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금금 미지급, 추가공사 비용전가, 민원 등에 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유형*의 부당특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

< 부당특약의 예시 >

- 선금금은 없으며, 선금금을 수령한다면 월별 기성금은 없다
- 설계변경 이외의 정산은 일체 없다
-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
-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등

□ 개선방안

-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
- 현행 법률상 추가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

□ 기대효과

-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하여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개정 ('11. 10월 국회제출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개정 ('11. 9월)

1-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원도급자는 하도급률이 82% 미만인 경우,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,

* 하도급률 : 하도급계약금액 / (도급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)

-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·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 시공계약만을 하도급으로 보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

< 사 례 >

* 동일인과 자재납품(하도급률 67%), 시공설치(하도급률 94%)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, 발주자에게는 시공계약만 하도급 통보할 경우 적정성 심사 회피 가능

⇒ 자재납품과 시공설치를 1건으로 보면 하도급률은 70%로 적정성 심사대상

□ 개선 방안

-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·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,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

□ 기대 효과

- 하도급 적정성 심사 내실화를 통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('11.9월)

1-3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시 이를 서면으로 체결·교부해야 하고,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나,
 -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하도급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에 미흡

□ 개선 방안

-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

* 관련 입법례 :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
- 원도급자의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가능

□ 기대 효과

-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주장을 용이하게 하는 등 권리보호 강화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개정('11.10월 국회제출)

2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

2-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
 - 다만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지급 보증이 불필요한 경우 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(전체 공사비의 약 0.44%)을 완화하고 있으나,
 - * 1,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보증수수료 부담
 -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 등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

□ 개선 방안

-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및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*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」 상 등록된 2개 이상의 신용정보업자 (예 :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한신정평가, 서울신용평가정보 등)의 평가등급

□ 기대 효과

-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보증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('11.9월)

2-2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지급기한 명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·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,
 - 선금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기한이 없어 원도급자가 선금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원활한 공사착수에 지장 초래

* 선금금의 지급 목적 : 공사 착수시 필요한 자재 구입, 현장노동자의 고용 등

□ 개선방안

-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·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

* 관련 입법례 : 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

□ 기대 효과

- 선금금 지연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하도급공사 착공을 원활하게 지원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개정('11.10월 국회제출)

2-3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금지급 등을 위해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
- 그러나 원도급자가 10일내 검사를 완료하고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는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

□ 개선 방안

-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

★ 관련 입법례 :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, 기간내 미통보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

□ 기대 효과

- 하도급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1항 개정('11. 10월 국회제출)

3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

3-1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대·중소 건설업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
-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
- ★ 현재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는 PQ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, 시공능력평가에는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음

□ 개선 방안

-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지 인센티브*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

★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~6% 가산
★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가능 입찰 규모 결정

□ 기대 효과

- 상호협력평가제도에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·중소 건설업체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('11.9월)

3-2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 제공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공사내용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공사 관련 정보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, 건설산업종합정보망^{*}(www.kiscon.net)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
*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 (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)

- 다만,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 관련 주요핵심 항목이 빠져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저가 하도급 등 부적절한 하도급계약을 통제^{*}하기가 곤란

*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변경 요구가 가능하고 불이행시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 (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)

□ 개선 방안

-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, 하도급대금 지급방법, 지급기한, 지급 횟수,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

□ 기대 효과

- 하도급대금 금액 및 지급 관련 정보를 발주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방지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, 제17조의2 서식 개정 ('11.9월)

3-3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건설공사 관련 분쟁 발생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 신청

- 대한상사중재원^{*}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도 가능하지만, 건설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실적 저조 및 조속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

*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규칙에 의거 1966년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국내유일의 중재기관으로,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(항소불가)을 가지며, 별도 소송 불필요

□ 개선 방안

- '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'(국토부), '표준하도급계약서'(공정위) 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

□ 기대 효과

-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 유도

□ 추진 일정

-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(국토부 고시) 개정('11.12월)
-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(공정위 권장사항) 개정('11.12월)

3-4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업무는 사업자단체(대한건설협회)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,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수행

- *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수 : ('08) 3,771건 → ('09) 4,272건 → ('10) 3,669건
- 최근 자본금 심사가 강화('10.11)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, 사업자단체 등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

*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무제표상의 예금 계속보유 여부, 회계장부 이외의 부채누락 확인 등 심사 강화

□ 개선 방안

-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와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서 전문기관(사업자단체)으로 위탁
-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 위탁기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정·고시

□ 기대 효과

-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관련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처리 기간 단축

□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개정('11.9월)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

-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(Regulatory Information System)에 등록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
-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, 국토해양부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

□ 관련 법령 개정 추진

- 관련 법령,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

□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

- 추진상황을 정기적(반기별)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
-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

<붙임>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요약

No	과제 개요	조치사항	소관부처
①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			
1-1	○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,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은 제한적 ⇒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⇒ 현행 법률상 추가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	「건설법」 개정 (‘11.10 국회제출) 「건설법 시행령」 개정(‘11.9)	국토해양부
1-2	○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률이 82% 미만인 경우,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나,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·납품계약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⇒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·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·체결한 경우,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	「건설법 시행령」 개정(‘11.9)	국토해양부
1-3	○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하여 하도급자 권리보호 미흡 ⇒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	「건설법」 개정 (‘11.10 국회제출)	국토해양부

No.	과제 개요	조치사항	소관부처
②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			
2-1	○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⇒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,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화	「건설법 시행규칙」 개정 (‘11.9)	국토해양부
2-2	○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선급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착수하는데 지장 초래 ⇒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·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	「건설법」 개정 (‘11.10 국회제출)	국토해양부
2-3	○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등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, 검사결과를 하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⇒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	「건설법」 개정 (‘11.10 국회제출)	국토해양부

No.	과제 개요	조치사항	소관부처
③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			
3-1	○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상호협력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 ⇒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 능력평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	「건설법 시행규칙」 개정('11.9)	국토해양부
3-2	○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하도급 관련정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에 빠져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정보를 실시간 인지하기가 곤란 ⇒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, 하도급대금 지급방법, 지급 기한, 지급횟수,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	「건설법 시행규칙」 개정('11.9)	국토해양부
3-3	○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건설공사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를 통한 해결도 가능함에도 인식이 부족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저조한 상황 ⇒ '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', '표준하도급계약서'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여 중재활성화	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개정('11.12) 「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」 개정('11.12)	국토해양부 공정거래 위원회
3-4	○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자본금 심사 강화 등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, 사업자단체 등의 활용이 불가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⇒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	「건설법 시행령」 개정('11.9)	국토해양부